

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민규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5907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1. 8.

발 의 자 : 박민규 · 문진석 · 박정현
이학영 · 민형배 · 이춘석
윤준병 · 서삼석 · 이재관
서미화 · 최혁진 · 노종면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수출입 관련 법령 준수 여부, 재무 건전성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하여 통관절차 및 관세 행정상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, 우수업체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받는 경우 그 공인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, 공인이 취소된 기관이 재공인을 받으려고 시도하는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을 받거나 수출입 관련 법령 위반으로 공인이 취소된 경우 공인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는 재공인을 받을 수 없도록 함으로써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려는 것임(안 제255조의5).

법률 제 호

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55조의5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제1항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공인이 취소된 기관은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재공인받을 수 없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55조의5(수출입안전관리우수 업체의 공인 취소) (생 략) <u><신 설></u>	제255조의5(수출입안전관리우수 업체의 공인 취소) ① (현행 제 목 외의 부분과 같음) ② 제1항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<u>공인이 취소된 기관은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재공인받 을 수 없다.</u>